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3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남창진, 박성연,
박철성, 서상열, 서호연,
신동원, 이경숙, 이병도,
이봉준, 최민규, 최윤희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지상철도가 야기하는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문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상철도 노후화에 따라 철도역 일대의 종합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 건설된 지하철 1, 2호선 등 도시철도를 비롯한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안 제3조, 제4조)
- 다. 기금의 조성(안 제5조)
- 라.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제8조)
-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상철도 지하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서울특별시에 건설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서울특별시에 건설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도시철도 중 지상에 건설된 노선 일부 또는 전부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철도지하화 관련 실·국·본부장

3. 기금운용 또는 철도지하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